한국증권금융 증권대차중개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참가자 및 담보관리 추가 변경사항 안내

(증권중개부 증권대차중개팀, 2020.06.26)

◇ 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」(금융위, '19.1.24 / '19.5.20)의 추진과제로 중개기관의 증권대차중개 참가자 및 담보관리 리스크 관리 방안 도입

□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관리 방안</th><th>변경 전</th><th>변경 후</th><th>시행일</th></tr>
<tr><td>참가자</td><td>차입자별 중개한도 설 정</td><td>■ [현 재] 중개한도 없음
■ [차입자별 중개한도 설정(예정)]
<table><tr><th>당 사 신용평가등급</th><th>차 입 한 도</th></tr><tr><td>1~4 등급</td><td>없 음</td></tr><tr><td>5 등 급</td><td>자기자본의 200%</td></tr><tr><td>6 등 급</td><td>자기자본의 100%</td></tr><tr><td>7 등 급</td><td>자기자본의 100% 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</td></tr></table></td><td>■ [차입자별 중개한도 완화]
<table><tr><th>당 사 신용평가등급</th><th>차 입 한 도</th></tr><tr><td>1~5 등급</td><td>없 음</td></tr><tr><td>6 등 급</td><td>자기자본의 200%</td></tr><tr><td>7 등 급</td><td>자기자본의 100%</td></tr></table></td><td>'20.7.1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담 보</td><td>적격담보 대 상 확 대</td><td>■ [적격담보대상 제외]
- 조건부/신종자본증권
- 低신용등급 증권
(BBB등급 이하 채권, A2등급 이하 CP 및 단기사채)
- 집합투자증권(ETF제외)
- 사모사채
- 잔존만기 30년초과 채권
- 잔존만기 20년초과 외채
- 영구채
- 후순위채
(단, AA이상 금융채는 적격담보 대상)</td><td>■ [적격담보 대상 확대]
- 잔존만기 30년초과 국고채
- 회사채(일부*)를 금융채로 변경
* 금융지주회사채, 상호저축은행채, 보험회사채, 금융투자회사채
- 국내/해외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권(김치본드)</td><td>'20.7.1

'20.9.1</td></tr>
<tr><td>담보비중 한도조정</td><td>■ [담보비중 한도 설정]
<table><tr><th colspan="2">담보증권</th><th>비중한도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CP 및 단기사채</td><td></td><td>30%</td></tr><tr><td>ABCP, ABSTB</td><td>15%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회사채</td><td></td><td>50%</td></tr><tr><td>A등급 이하</td><td>15%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A등급 이하 금융채</td><td>25%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외화증권</td><td>15%</td></tr></table></td><td>■ [외화증권 대상별 담보비중 한도 조정]
– 외화증권에 대한 담보비중한도(15%)는 유지하되, 외국국채 및 국내 기관 발행 외화채권 중 국채/특수채에 대해서는 한도 제외</td><td>'20.9.1</td></tr>
</table>

※ **[차입자별 중개한도 설정]** 계좌별(동일 회사 내의 부서 단위 구분계리)이 아닌, **참가자별**(회사 단위) 설정
[담보비중 한도 설정] 계좌별(동일 회사 내의 부서 단위 구분계리)로 **비중한도**를 설정

첨부 1 차입자별 중개한도 설정 ('20.7.1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3">차주등급별 중개한도</th></tr>
<tr><td>일반법인
제 외 한
참 가 자</td><td colspan="3"><table><tr><th>당사 신용평가등급</th><th>차입한도(이내)</th></tr><tr><td>1~5 등급</td><td>없 음</td></tr><tr><td>6등급</td><td>자기자본의 200%</td></tr><tr><td>7등급</td><td>자기자본의 100%</td></tr></table></td><td rowspan="2">- 참가자별 신용평가등급은 알려드리지 않으며, ACE+ [3322]차입한도조회 화면에서 참가자별 차입한도 및 잔여한도 조회가능 (7/1 화면 오픈)

- [차입자별 중개한도 설정] 계좌별(동일 회사 내의 부서 단위 구분계리)이 아닌, 참가자별(회사 단위) 설정</td></tr>
<tr><td>일반법인
(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)</td><td colspan="3">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차입한도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담보설정대상가액의 25% 이상을 차입자 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제공한 일반법인 참가자</td><td>1~5등급</td><td>차입자 자기자본의 25%와 당사 자기자본의 20% 중 적은 금액</td></tr><tr><td>6등급 이 하</td><td>차입자 자기자본의 25%와 당사 자기자본의 20%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기 타 일반법인 참가자</td><td>1~5등급</td><td>차입자 자기자본의 50%와 당사 자기자본의 20% 중 적은 금액</td></tr><tr><td>6등급 이 하</td><td>차입자 자기자본의 50%와 당사 자기자본의 20%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※ 차입자별 중개한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사 신용평가등급이 존재하지 않거나, 자기자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증권금융이 별도의 한도를 부여함

- 「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**외국인**,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의 **공공기관**(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), 자본시장법에 따른 **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투자일임업자**의 경우 **차입한도 제한 없음**

첨부 2 적격담보 대상 확대 등

□ **(장기 국고채) 30년 초과 국고채를 적격담보로 인정** ('20.7.1)

○ 시장의 국고채 발행 증가분에 대한 활용도 제고

□ **(외화증권 ①) 국내/해외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권**(김치본드)을 적격담보로 추가 ('20.9.1)

구 분		감정가격(%)*	비 고
담보 대상	등급 등		
외국 국채	미국, 일본	95	
국내기관의 **국내**/해외발행 외화채권	국채,특수채	95	**국내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권 추가 (김치본드)**
	AAA등급	90	
	AA등급	82	
	A등급	72	
해외기관의 **국내**/해외발행 외화채권	AAA등급	90	**해외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권 추가 (김치본드)**
	AA등급	82	
	A등급	72	

* 시가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

□ **(외화증권 ②) 외화증권 대상별 담보비중 한도 조정** ('20.9.1)

○ 외화증권에 대한 **담보비중한도(15%)는 유지**하되, **외국 국채 및 국내기관 발행 외화채권 중 국채, 특수채에 대해서만 한도 제외**

□ **(채권분류 변경) 회사채 일부**를 **금융채**로 분류 변경 ('20.7.1)

○ (대상 채권) 금융지주회사채, 상호저축은행채, 보험회사채, 금융투자회사채(증권사·자산운용사·종금사 등)

⇨ 채권분류 변경에 따른 **적격담보 대상 확대(AA등급 이상 후순위 금융채) 및 담보인정비율 상향**

첨부 3 증권대차중개 담보대상 및 감정가격

담 보	구 분		담보대상	감정가격(%)
주식	KOSPI 200		O	78
	기타 상장주식 (단, 관리종목은 제외)		O	68
	한국거래소 주식		O	98
주식예탁증권	상장종목		X	68
채권	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통화안정증권		O	98
	금융채	AAA등급	O	93
		AA등급	O	93
		A등급	O	80
		BBB등급	X	70
채권	회사채	AAA등급	O	93
		AA등급	O	88
		A등급	O	75
		BBB등급	X	70
집합투자증권	주식형/혼합형		X	60
	채권형		X	70
	MMF		X	50
	ETF	국채 및 통화안정증권	O	95
		기타	O	65
CP 및 단기사채*	A1등급		O	75
	A2등급		X	65
	A3등급		X	60
CD	내국통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		O	93
원화예치금	금융투자업규정 제5-2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		O	95
현금	내국통화		O	100
외화채권**	외국 국채	미국, 일본	O	95
	국내기관의 국내/해외발행 외화채권	국채, 특수채	O	95
		AAA등급	O	90
		AA등급	O	82
		A등급	O	72
	해외기관의 국내/해외발행 외화채권	AAA등급	O	90
		AA등급	O	82
		A등급	O	72
		BBB등급	X	65
외화예치금**	USD, JPY, CNY, EUR로 표시된 예치금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5-2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예치한 예치금		USD, EUR	90
외화**	USD, JPY, CNY, EUR		X	95

* [ABCP & ABSTB 담보대상 기준] ①신용평가등급 A1, ②기초자산이 부동산 PF, 파생상품 관련 자산 제외

** 시가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, 김치본드는 9/1 이후 가능

※ 외화표시 담보채권의 감정가격 산출 시, 시가는 Fnpricing 전영업일 기준수익률,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전영업일 고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함 ('20.7/1)